WA

리벤지포르노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빅토리아 SA NSW 와 달리 WA는 2016년 9월 가족폭력법을 강화하는 방식을 차용, 사적이미지의 유포/게재한 자 에게 최대2년징역형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해당 법안을 마련한 국회의원은 3월 재임에 당선되면 리벤지포르노를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함. ( ???)

가족 폭력 법안 2004 의 개정 2016 중 디지털 성범죄 방안에 관한 부분 발췌.

5A. (2) 가족 폭력에 해당하는(해당 된다고 해서 가족 폭력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c) 가족간의 스토킹 혹은 사이버 스토킹 행위

 (k) 가족간의 사적 이미지의 유포와 게재, 혹은 유포와 게재를 하겠다는 협박 행위

그래피티와 반달리즘 법안 2016 (🡪 인터넷을 공공장소로 볼 수 있다면)

섹션 13. 재산 몰수에 관한 조항

(1) 형법 섹션 731 은 법원이 본 법안을 어긴 개인에게 유죄선고를 했을 시 적용되며 이 경우 형법을 어긴 것 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2) 부섹션 (1) 의 “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에 관련해 사용된 것” 은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 하려고 했던 것”을 포함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그래피티 도구
2.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의 이미지를 기록, 저장, 유통하기 위해 범죄자에 의해 사용된 모든 도구.

형법수정 ( 텔레커뮤니케이션 범죄와 그 기준) 법안 (제2호)2004 no. 127,2004- 스케쥴1

텔레커뮤니케이션범죄

파트 10.6 –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473 division 서두

473.1 정의

. .

해당 법안에서 “접근”이 포함하는 범위:

1. 컴퓨터로 컨텐츠를 전시하는 행위, 컴퓨터로부터 나온 다른 생산물 또는
2. 해당 컨텐츠를 컴퓨터 내에서 혹은 외장형 저장장치로 복사/이동하는 행위
3. 컨텐츠가 프로그램일경우 프로그램의 실행.

474.17

전달 매체를 악의를 가지거나 위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3년의 징역을 구형 할 수 있다.